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83
----------	-------

발의연월일 : 2026. 6. 25.

발 의 자 : 김종민 · 허성무 · 이성운
정일영 · 손 술 · 전종덕
한창민 · 윤종오 · 황 희
문대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의 대상을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벤처기업’과는 별도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이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소셜벤처기업이 벤처투자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투자심사 과정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으며, 소셜벤처투자 생태계를 아우르는 지원과 소셜벤처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의무투자·공공조달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셜벤처기업을 벤처투자의 대상에 추가하고,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도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며, 소셜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투자의무 설정,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벤처투자 방안 마련 등을 규정하여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벤처기업”을 “벤처기업, 소셜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소셜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을 말한다.

제5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셜벤처기업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소셜벤처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투자의무 설정방안 마련
8. 소셜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벤처투자 확산방안 마련

제13조제1항 중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을 “창업기업, 벤처기업 및 소셜벤처기업”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제38조제1항 중 “제4호까지”를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로 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제4호까지”를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까지”를 “제3호까지, 제3호의 2”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벤처투자”란 창업기업, 중소기업, <u>벤처기업</u> 또는 그 밖에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p> <p>3. ~ 6. (생 략)</p> <p><u><신 설></u></p> <p>7. ~ 13. (생 략)</p> <p>제5조(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 중소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벤처기업, 소셜벤처기업</u>----- -----.</p> <p>3. ~ 6. (현행과 같음)</p> <p><u>6의2. “소셜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을 말한다.</u></p> <p>7. ~ 13. (현행과 같음)</p> <p>제5조(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 ----- ----- ----- ----- ----- ----- -----.</p>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 14. (생략)

②·③ (생략)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① 벤처투자조합(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2. (생략)

-----.

-----.

1. ~ 3. (현행과 같음)

4. -----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
-----.

5. ~ 1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① -----

제3호까지, 제3호의2
-----.

1.·2.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